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7. 20 선고 2021나104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표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7. 20.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합146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내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책임 주장은 철회하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고, 예

실적으로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당사자는 선택적 병합 관계

이 유

1. 인정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 기재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3의 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글상자 안 9행 “을은 용역수행 중을 자신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부분을 “을(피고)은 용역수행 중 ‘을’ 자신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로 고친다.

○ 4쪽 글상자 안 11행 “조업원”을 “종업원”으로 고친다.

○ 8쪽 2행 “2. 당사자들의 주장”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고친다.

○ 8쪽 3행부터 아래에서 4행까지의 부분(“가. 원고의 주장” 기재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해야 하는 ‘각종 영향조사’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가 포함되고, 창원시가 이 사건 투자의향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면서 ‘기존 I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검토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2009년경 있었던 기존 I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확인하여 거기서 중요한 조건이었던 ‘재두루미 서식지 완충지대를 위한 무논 조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해결책을 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는 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I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 확인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창원시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아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9쪽 6행의 “3.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10쪽 3행 각주 4)번을 삭제한다.

○ 13쪽 2행 이하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 이 사건 사업이 실제 성사되도록 용역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피고가 환경영향평가 통과, 이 사건 사업 완료라는 결과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목적)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용역의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용역을 수행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계약서 제6조(용역의 범위)를 보면, 세부적인 피고의 용역 범위로서 ‘1. 투자의향서 작성, 2. 도시계획 업무, 3. 측량 및 각종조사, 4. 각종 영향조사, 5. 실시설계’를 특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업 완료나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뚜렷한 용역 범위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 업무내역을 기재한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업무내역으로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내역에 따른 구체적 결과 도출을 업무내역이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계약서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보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용역이 중지될 경우’를 해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환경영향평가 통과 실패, 이 사건 사업 달성 실패 등을 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조항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 내용들은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의 성질 보다는 위탁된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통한 이 사건 사업 달성이라는 결과를 제공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달성에 지장이 발생한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설령 환경영향평가 통과 실패를 객관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창원시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려 때문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중요 반려사유는 창원시가 2009년경 1일반산업단지 조성 당시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 ‘재두루미 서식지 완충지대를 위한 무논 조성’에 관하여 구체적 이행계획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창원시 측의 사유를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한 피고 측의 사유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²⁾. 실제로 원고는 위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이 창원시 측의 이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데,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관련하여 피고 측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었다.】

○ 13쪽 3행부터 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반려된 이유,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무산된 이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1조 제1의 나.항에서 이 사건 사업 취소 내지 용역 중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기성 부분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내세워 피고의 그동안의 용역내역을 구체적 액수로 감정하여 평가한 후 원고가 피고 수행 용역내역에 관한 평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의 지급시기, 방법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7조를 보면, 지급시기와 금액을 용역업무 수행 과정 및 순서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시(1단계) 150,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도면완료시(2단계) 100,000,000원, 산업단지계획접수시(3단계) 1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안) 제출접수 업무까지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단계별 위 약정금액을 지급하였고(부가세 포함), 위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반려처분으로 3단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정해진 대로 3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용역업무를 전부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정해진 용역대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3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원고와 피고의 의무는 모두 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3단계까지 피고가 자신의 용역업무가 완료한 이상 그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 수행 용역업무에 관하여 기성내역을 정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정산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1조 제1의 나.항에서 정한 기성 부분 정산의 의미는 위 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각 수행단계를 완료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그때까지 피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기성내역을 정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3단계까지 자신의 용역업무 수행을 완료한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에 가깝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때까지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용역업무의 내역들에 대한 구체적 기성금을 산정한 후 그 기성금과 원고의 기지급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도급계약의 경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급인에게 결과채무가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피고의

용역제공업무는 수단채무로 봄이 타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 수행 용역업무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성금 산정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여러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해빈, 판사 반병동, 판사 유정우

1) 원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21. 7. 6.자 참고서면을 진술함으로써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을 철회하였다.

2) 무논 조성을 위한 형질 변경 등의 조치는 창원시가 행정주체로서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피고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하면서 무논 조성을 위한 이행이나 가시적 조치 내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